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0. 12.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2. 03.

경제도시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경제지원과)
- 제출일자: 2020. 11. 20.
- 회부일자: 2020. 11. 20.
- 검토기간: 2020. 11. 23. ~ 11. 27.(5일간)

## 2.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0.8.12.) 시행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요건에 맞는 우리구의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신설)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 신설)

##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 법령: 불임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제 심사: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 입법예고(2020. 10. 12.~11. 2.)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내용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임
-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균형있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골목형상점가의 육성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관련 법령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11.>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가.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